

퇴직연금 중도인출신청서

(DC,기업형·개인형IRP)

서류확인 및 접수확인자	담당	책임자

년 월 일

전 산 인 자 란

1. 신청 정보

성명		생년월일		휴대전화	
제도	<input type="checkbox"/> DC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형IRP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형IRP		계좌번호 또는 회사명	DC, 기업형IRP의 가입자는 회사명 작성	
입사일			중간정산일		

2. 신청 내용

신청금액	<input type="checkbox"/> 전부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부 _____ 원
	[일부 신청시 유의사항] 1. 전일자 평가금액의 90%, 부담금 입금 잔액 중 적은 금액으로 인출 가능합니다. 단, 퇴직소득과 기타소득(가입자부담금)이 존재하는 경우 퇴직소득 전부를 인출할 수 없습니다. 2. 인출순서는 ① 비과세소득(보유상품)→ ② 퇴직소득(보유상품)→ ③ 기타소득(보유상품) 순으로 인출되며, 각 소득별 보유상품을 매도하여 지급합니다. 매도순서 지정은 비과세, 퇴직소득 또는 퇴직, 기타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상품 '매도순서 지정신청서'(별지-출력물로 제공)를 작성(필수) 하시고 퇴직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뒷면에 매도순서를 작성(필수) 하시기 바랍니다.
임원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임원
	[법인의 임원인 경우 중도인출시 세법관련 유의사항] 세법상 퇴직급여 한도에 초과 분에 대하여 기업 앞 반환이 필요한 경우 「퇴직연금 임원퇴직급여 한도금액 확인서」 징구 필요 - 임원의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 초과 분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적용됩니다. [소득세법 제22조,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] -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 초과 지급시 손비(비용) 인정이 불가합니다.[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]
가입자 부담금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입자부담금(적립금)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입자부담금(적립금) 있음
	[가입자부담금이 있는 경우 유의사항] 1. 「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」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(5-20-0006_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지지급 신청서) 및 사유별 필요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<p>* 부득이한 사유의 세율 적용 - DC,기업형IRP : 「가입자 부담금 + 운용수익」에 대하여 연금소득세율 적용 - 개인형IRP : ① 퇴직금 : 이연퇴직소득세 X 70%, ② 그 외(소득/세액공제 적용 원금 및 운용수익) 연금소득세율 적용 (3.3 ~ 5.5% 적용)</p></div> 2. 소득(세액)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가입자부담금의 원금은 비과세 적용되므로 신청 전 필요서류(연금보험료등 세액 공제 확인서/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/연금납입확인서)를 제출하여 과세제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추가 부담금 입금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있음* (금액 _____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 * 추가부담금이 있는 경우 「퇴직연금 부담금 등록 신청서 (5-14-00151)」 별도 징구하여 부담금 생성 및 입금 (상품 매수 완료)이 되어야 합니다.
입금계좌	금융기관명 : _____ 계좌번호 : _____ 예금주 : *본인 계좌만 가능

3. 중간정산 특례 신청

중간정산 특례* 적용여부 *과거 중간정산한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여 최초입사일부터 근무 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소득세를 재산출한 후 기납부된 퇴직소득세를 차감 적용하는 것	당해 년도 이전에 중도인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중간정산 합산과세 적용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적용
	당해 년도에 퇴직연금지급 이외에 회사(또는 하나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)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에 있는 경우(해당시 합산과세 필수)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있음(합산과세 필수 적용)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

주) 합산과세 적용시 중간정산 받은 금액과 최종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재정산합니다. 이 경우 중간정산 받은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.

다음 페이지 계속



제출서류 안내

*사유별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사유	제출서류
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	<p>*배우자명의 등기는 신청 불가(공동명의로는 가능)</p> <p>[본인주택 매수할 경우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1부(신청일 당일) - 매수할 부동산의 건물등기부등본 1부(신청일 당일) - 세목별 과세(납세)증명서(지방세 과세 증명서(전국자치단체-재산세(주택)) - 주택매매계약서 <p>*본인주택을 매도하고 당일자에 새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 신청 불가 (신청접수일 당일 무주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함)</p> <p>*주택구입 이후 신청하는 경우, 소유권이전등기 1개월 경과시 신청 불가</p> <p>[주택분양신청 또는 분양권 매수할 경우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1부(신청일 당일) - 주택분양계약서 (최초 분양권자와의 분양금급계약서 및 최초 분양권자와 퇴직연금가입자와의 매매계약서) <p>[주택 신축 또는 경매취득의 경우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1부(신청일 당일) - 주택설계서 및 공사계약서(신축의 경우), 경매 증명서(경매의 경우) * 헌집을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멸실등기를 통하여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 - 소유 주택 재건축(중축, 개축 등) 사유로 중도인출 불가
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거 목적의 전세금(임차보증금) 부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1부(신청일 당일) - 세목별 과세(납세)증명서(지방세 과세 증명서(전국자치단체-재산세(주택)) - 전세 및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-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계약금 입금증(계좌이체내역서 가능) - 임차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
가입자,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(소득세법 제50조 제1항)의 6개월 이상 의료비(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) 부담	<p>의료비 확인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진단서 및 소견서(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내용 및 질병명과 질병코드 명시) -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청구서, 영수증, 의료비 납입증명서 등 - 의료기기의 임차 또는 구입의 경우 보호구 처방전
	<p>연간임금총액 확인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입자의 직전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-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신청일 기준)
	<p>부양가족 확인 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* 부양가족의 범위(부양가족의 요양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) : 배우자, 근로자(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속으로서 만60세 이상인자,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,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인 형제자매 - 미성년자의 경우 필요시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
5년 이내에 『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원의 파산선고문 *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만 신청가능
5년 이내에 『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(변제계획서 포함) *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개인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만 신청가능 *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 신청 불가 *개인워크아웃제도는 중도인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
추가서류 [가입자부담금이 있으면서 소득(세액)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세제외 및 환급신청서 - 연금보험료 등 소득,세액공제 확인서 - 금융거래정보제공서(연합회한도 조회용) - 연금납입확인서

